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
 편집: 문화공보관 심 계 섭
 전화: 75-7834
 인쇄: 서울특별시출판발간실
 전화: 75-6090

제 785 호
 1980. 6.14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430 호: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율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
 조례..... 3

◎ 고 시

제 206 호: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 지정 고시..... 3

제 207 호: 광화문구역재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인가..... 4

제 208 호: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..... 4

제 209 호: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건축및지적 승인..... 5

제 210 호: 가포로주변재개발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계획결정지적
 승인..... 5

제 211 호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지령허가..... 6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제 212 호 :	공평구역 제 3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.....	7
제 213 호 :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변경.....	14
제 215 호 :	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실시계획인가	14
제 216 호 :	도시계획사업 (남서울대공원설치허가) 시행인가변경	15
제 217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16
제 219 호 :	도시계획시설 (시장) 변경지적승인고시	17

◎ 공 고

제 195 호 :	반려견문제퇴입부변경공람공고	18
제 196 호 :	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	18
제 19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실시계획공람공고.....	19
제 199 호 :	시장개설허가공고	19
제 200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20
제 201 호 :	서울특별시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	21
제 209 호 (도봉구공고) :	동사무소위치공고	21
제 310 호 (도봉구공고) :	공인위신조및개각공고	22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원
1980년 6월 14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30 호

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 2조제 1항 본문중 "제 1호"를 "제 1호 및 제 5호"로 하고 "제 2호 내지 제 5호"를 "제 2호 내지 제 4호"로 하며 제 1항제 1호 "다"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자금 융자받아 건축한

군하사관용 주택으로서 이축, 개축이 아닌 신축을 포함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206 호

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

문화재보호법 제 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조 및 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8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0.6.11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목록

종별및지정번호	명 칭	수량	소재지	소유자
지방유형문화재 제 39 호	약사사 3층석탑	1 기	서울시장서구개화동 332-2	약 사 사
제 40 호	약사사석불	"	"	"
제 41 호	화산군신도비	"	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동 75-122	국 유
제 42 호	세종대왕신도비	"	서울시동대문구정량리동 산 1-157	세종대왕기념 사업 회
제 43 호	연경군신도비	"	서울시도봉구공릉동 103	육군사관학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07 호

광화문구역재개발사업
시행기간 변경이가

서울특별시고시 제 127 호 (77.4.27)에 의거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된 광화문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제 1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1980.6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내용

1) 사업시행기간

당초 : 77.4.27-80.6.30

변경 : 77.4.27-80.12.31

사유 : 지장물철거지연 및 건축공사지연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08 호

아파트지구개발사업
시행자지정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1 호 (78.8.4) 호와 서울시 고시 제 67 호 (79.2.14) 와 관련임.

2.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(76.8.2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 호 (76.10.2) 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

강남구 서초동일부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 391 호 (78.

8.4) 및 서울시 고시 제 67 호 (79.2.14) 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올한바 그중 일부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기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(주택행정과) 및 강남구청 (시민봉사실)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증한다.

1980.6.11

서울특별시장

○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(변경) 지정내역

가. 사업시행자 : 삼호주택(주) 조용시
나. 사업시행구역위치 : 강남구서초동 98 번지 일원

• 시행구역변경 : 1:1,459.4 평중 2,610.6 평 재지 (별첨부록 및 도면참조)

• 사업명 : 아파트건설

• 사업규모 : 25 평형 700 세대

• 사업비 : 17,800,000 천원

• 사업기간 : 78.8.4 - 79.12.31

다.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: 80.8.11 - 80.6.18 (7일간)

라.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주택국 (주택행정과) 강남구청 (시민봉사실)

아파트지구개발시행계획외지역목록

순위	지번	면적	소유자
1	강남구서초동 335 부락 132 번지 가, 나	492.5 평	
2	" " " 4 호	90 평	
3	" " " 5 호	178 평	
4	" " 308 부락 88-1	1,116.9 평	
	" " " 38-2		
	" " " 90		
	" " " 91		
	" " " 94		
5	" " " 89	122.2 평	
6	" " " 85 번지 3 호	438.1 평	
7	단지내 도로	173.2 평	서울시도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9 호

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을 다음과 같이 설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

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6.11

서울특별시청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지	면적	비고
건설	공용의청사	도봉구방학동 335 의 1, 3	393 평	지적승인도함
"	"	도봉구하계동 170 의 1 일대	608 평	"
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0 호

마포로주변재개발구역 제1지구
재개발사업계획결정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 제 146 호(80.5.19)에 의거 재개발사업계획결정된 마포로주변 재개발구역 제1지구(이하 도시계획법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과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의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1980.6. 서울특별시장

가. 마포로주변구역 제1지구

1) 공원시설 결정조서

명칭	위치	면적	비고
공덕공원	마포구공덕동 255-6 일대	1,596㎡	
도화공원	마포구도화동 292-28 일대	1,335㎡	

2) 시설녹지 결정조서

명칭	위치	면적	비고
도화녹지	마포구도화동 168-6 일대	215㎡	
마포녹지	마포동 35-14 일대	660㎡	

3) 주차장시설 결정조서

명칭	위치	면적	비고
도화1 주차장	마포구도화동 44-8 일대	1,836㎡	
도화2 "	" " 181-47 일대	967㎡	

4) 도로시설결정조서

구분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신선	중로2류	206	15m	150m	도화동 39-1	도화동 39-6	
"	"	183	15	68	" 17-20	" 17-12	
"	소로1류	1	10	145	신공덕동 23-11	신공덕동 56-25	
"	"	2	10	332	도화동 170-7	도화동 161-37	
"	"	3	10	294	마포동 156-4	" 292-46	
"	"	4	10	220	" 376-3	마포동 312-3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1 호

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
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7 호 (79.

12.11) 및 동고시 제 6 호 (80.1.11) 로 도시계획시설 (소매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서구 신흥동 597번지 (688 평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. (관계도서생략)

1980. 6.11

1980. 6.12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

- 1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 597
- 2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명칭: 신평시장
- 3. 사업의 규모: 896.7명중 688명
- 4. 사업시행자: 강서구신월동 597번지 원하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원종식
-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가. 착수예정일: 80. 6.
 - 나. 준공예정일: 80.12.31
- 6. 위치및계획평면도: 별첨 (도면생략)

- 다. 용
- 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: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재개발사업
- 나. 시행구역 및 면적
 - 시행구역: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25번지 69필지 일대
 - 시행면적: 5,382.2㎡
 - 대 지: 4,225㎡
 - 건축면적: 1,410㎡
 - 인 면 적: 28,240㎡
 - 층 수: 지상 12층, 지하 4층
 - 용 도: 사무실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 호

공평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

- 다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종로구 공평동 25번지 대주기업주식회사
- 라. 시행기간: 시행인가일 - 82년 9월 30일
- 바. 시행인가년월일: 80.6.12
- 마. 시행자의 호 및 성명: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25번지 대주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용
- 사. 수용 또는 수용할로지,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: 경세

- 1. 건설부고시 제 285 호 (78.9.26) 및 동고시 제 533 호 (79.12.28) 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재개발사업 계획결장된 공평구역 제3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1 과 및 공평구역 제 3 지구 도시재개발법시행자의 사무소에 비치

별첨 (2) 수용 또는 사용할 교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				
지 번	토 지 현 황			건 축 물 현 황	
	지 목	면 적		용 도	구 조
		㎡	평		
공평동 1	대	574.5	173.78	주 택	연화조소레트층 2 계건
" 1-1	"	14.4	4.35		
" 1-2	"	16.1	4.87		
" 2	"	360.3	108.99	사무실	칠근콘크리트세멘트층
" 3	"	70.7	22.17		스레트층 7 계건 내 세멘트층 스투트
" 3-2	"	35.8	10.82		
" 25	"	1,386.2	419.32		
" 25-1	"	162.1	49.03		
" 25-2	"	14.2	4.29		
" 25-3	도로	99.6	30.12		
" 25-4	대	141.3	42.74		
" 25-5	"	59.1	18.93		
" 27-1	"	20.2	6.11		
" 28-2	"	39.7	12.0		
" 29	"	86	26.01		
" 30	"	50.8	15.36		
" 31-1	"	258.9	78.31		
" 31-2	"	2.0	0.6		
" 31-3	"	3.6	1.08		
" 32	"	46.9	14.23		
" 32-1	"	55	16.63		
" 33	"	29.6	8.95		

면적(평)	소 유 자	주 소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	
			근저당 권 자	주 소
105.9	이 성 용	종로구공평동 25 번지	해당없음	
801.889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서 울 시 이 성 용	서 울 시 종로구공평동 25 번지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	/	/		

지 번	토 지 현 황			건 축 물 현 황	
	지 목	면 적		용 도	구 조
		㎡	평		
공평동 33-1	대	21.1	6.38		
" 34	"	4.0	1.2	사무실	철근콘크리트 스텝
" 34-1	"	59.2	17.9	"	철근콘크리트조 평육개
" 34-2	"	4.1	1.24	"	및 세멘트블록조
" 38	"	0.9	0.27		
" 39-3	"	73.0	22.08	점포, 여관	철근콘크리트조 평육개 5층
" 41	"	22.6	6.83		
" 41-1	"	79.0	23.89	주 택	목조와즙평가진
" 41-2	"	98.7	29.85	"	목조와즙평가진 (부속)
" 49-1-마	도로	66.2	20.02		
" 49-3	대	49.3	14.91		
" 100-3	도로	3.1	0.93		
" 30-1	대	18.6	5.62		
" 32-2	대	3.7	1.11		
인사동 194-9	종교용지	218.2	66.21	주 택	연와조와즙평가진이가 1동
				"	부속연와조와즙평가진이가 1동
인사동 201	"	82.2	24.86	"	목조와즙평가진
" 203	"	72.7	21.99	"	철근콘크리트조 평육개 2계건
" 205	"	10.2	3.08	"	목조와즙평가진
" 205-1	"	39.4	11.91	"	
" 210-1	도로	16.0	4.83		
" 210-2	대	41.0	12.4		
견지동 120-1	"	5.6	1.69		
" 120-6	"	77	23.29		

면적(평)	소유자	주소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	
			근저당권자	주소
93.76	이성용 재단법인고대교우장학회	종로구공평동 25번지 종로구공평동 34번지	국민은행	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9번지 - 1
39.2	권지용 원찬회, 원병회	종로구공평동 38번지 " 39-3	송무근	서울도봉구미아동 637-172
20.31	이성용	" 25번지		
9.71	"	"		
	서울시	서울시		
	이성용	종로구공평동 25번지		
	서울시	서울시		
	이성용	종로구공평동 25번지		
	"	"		
19.55	재단법인남감리교회	중구태평로 1가 64-8		
11.33	대한선교부유지재단			
11,455	이성용	종로구공평동 25번지		
30.52	"	"		
9,125	"	"		
	"	"		
	서울시	서울시		
	이성용	이성용		
	"	"		
	"	"		

지번	토지현황			건축물현황	
	지목	면적		용도	구 조
		㎡	평		
연사동 194-22	대	38.7	11.7	주택	목조와즙 평가건
" 194-23	"	95	28.73	"	"
" 194-30	"	8.1	2.45	"	"
" 197	"	61.7	18.66	"	"
" 197-1	"	0.4	0.12	"	"
" 197-2	"	4.4	1.33	"	"
" 197-3	"	9.5	2.87	"	"
" 198	"	30.7	9.28	"	"
" 198-1	"	3	0.9	"	"
" 198-2	"	2.4	0.72	"	"
" 199	"	49.6	15.0	"	"
" 202	"	43.0	13.0	"	"
" 204	"	56.2	17.0	"	"
" 206 206-1	"	49.6	15.0	"	"
" 194-19	"	23.7	7.16	"	"
" 194-29	"	2.7	0.81	"	"
" 194-20	"	10.6	3.2	"	"
" 194-17	"	157.4	47.61	"	"
" 196	"	44.7	13.52	"	"
" 196-1	"	1.3	0.39	"	"
" 196-2	"	11.5	3.47	"	"
" 195	"	46.9	13.58	"	"
" 195-1	"	5	1.51	"	"
" 195-2	"	14.6	4.41	"	"

면적(坪)	소유자	주소	소유권이외의관리상세	
			당권자	주소
7	안태화	종로구인사동 194-22	중기영 은행	중구을지로 2가 36-
18	조훈석	" 194-23	중기영 은행	중구남대문로 2가 9 1
	"	"	"	"
	이창식	" 197	중소기 영행	중구을지로 2가 36-
	"	" 194-17	"	"
	"	"	"	"
	"	"	"	"
6.15	이동규	" 198	"	"
	"	"	"	"
	"	"	"	"
10.0	이혜심	" 199	"	"
6.72	이성무	" 202	"	"
12.0	권오동	" 204	"	"
12.375	김경식	" 206	"	"
	신태종	" 194-19	"	"
	"	"	"	"
	표명우	" 194-18	"	"
21.0	이창식	" 194-17	중소기 영행	중구을지로 2가 36-1
8.4	"	"	"	"
	"	"	"	"
	"	"	"	"
10.835	"	"	"	"
	"	"	"	"
	"	"	"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13 호

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시행허가변경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 호 (79. 3. 2) 로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시행허가한 마포구 성산동 369-1 호 번지의 45 필지 (약 40,767 평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 기한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 6. 13

서울특별시장

○ 다음(변경사항)

- 1) 당초사업기간: 1979. 8. 2 - 1980. 6. 30
- 2) 변경후 사업시행기간: 1979. 3. 2 - 1981. 6. 30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15 호

도시계획사업(하수도)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 고시 제 453 호 (1978.9.6)

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(진관내동 78 번지 하수도공사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2.19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

2.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년 6월 14 일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1. 사업시행지: 은평구진관내동 78 번지
- 2. 사업의종류 및 명칭: 하 수 도
- 3. 사업의규모: B = 29^M L = 205^M
- 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(은평구청장)
- 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착수: 실시계획인가일
준공예정: 1980. 6. 30
- 6. 인가번호: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6 호
- 7. 수용 또는 시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: 별첨 토지조서 참조
- 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명명: 별첨 토지조서 참조 (인가조건)
별첨 개략 설계도서(평면도)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“ 변경 고시 안 ”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216 호

도시계획사업 (남서울대공원
설치허가) 시행인가변경

1. 당사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사업 (남서울대공원설치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시행령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4 호 (78. 3. 29) 및 제 320 호 (78. 10. 25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인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남서울대

공원건설사업소 (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제리소재) 및 경기도시흥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6. 16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위치 : 경기도시흥군과천면 막제리 2번지의 1,556필지
 -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하리 352일대
- 나. 사업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공원, 도로, 광장조성
 - 명칭 : 서울대공원건설

다. 사업의규모변경내역

시 설 규 모	당 초	변 경	비 고
시설구역면적	1,460,176.7 평	1,461,034.7	858평증가
도	광로 56 호 폭 50 미터 연장 1,450 "	폭 50 미터 연장 1,450	변경없음
	광로 71 호 폭 100 " 연장 550 "	폭 100 연장 550	"
로	광로 55 호 폭 50 " 연장 1,150 "	폭 50 연장 1,150	면적증가 (858평)
광 장	20,000 제곱미터	20,000 제곱미터	변경없음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착공 및 준공예정일 :

78.10. . . . - 86.12. . . .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

소재지 변경 : 생략

사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: 주소

성명 :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217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90 호(74.12.20)로 시설결정된 상일동 358-312번지일대의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10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6.16.

서울특별시강

1. 사업시행지: 강동구 상일동 358-312번지일대
2. 사업의종류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도로)(상일여중진입로포장공사)
3. 사업시행규모: 가. 도로포장: 25,78아르 (L=448미터, 비=6미터)
나. 하수관부설: 디=600-700밀리미터 (L=470미터)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
5. 사업의착수및 준공예정일: 80. 4. 1 - 80. 7. 30.
6.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, 지목, 지적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: 별첨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성명: 다음
8. 방사선제조서: (생략)
9. 위치 및 계획평면도: (생략)

상일여중진입로개설공사구간지목토지조서

번호	위 치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1	상일동 303-1	담	8㎡	동대문구제기동 137-382	박 학 여
2	300-2	"	10㎡	"	"
3	311-1	전	578㎡	용산후암동 164-11	충천입씨문화부서 공과동중
4	316-8	암	122㎡	강동상일동 316-3	이 강 수
5	316-15	"	258㎡	강동천호동 142-20	김 애 순
6	334-4	대	102㎡	강동천호동 161-24	임 득 순
7	333-1	대	6㎡		미 북 구

번호	위 차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8	상일동 334-7	대	136 평	강동상일동 334-2	대한예수교
9	332	전	207 평	강동잠실주공아파트 239-507	장로회상일교회
10	33	대	277 평		한총한
11	326-1	임	233 평	동산주암동 164-11	미부구
12	329-7	대	177 평	강동상일동 329	충천입세군하부
13	329-6	대	9 평		사공파동중
14	338-1	대	462 평		김중백
15	338-1	전	349 평		서울시
16	328-1	대	552 평		
17	358-7	대	43 평		
18	358-9	학교용지	4 평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19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지적승인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77 호(80.5.27)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

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리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0. 6. .

서울특별시장

○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시장명칭	위 차	면 적	비 고
기정	소매시장	상계중앙시장	도봉구상계동 389 -234	997 평	
변경			의 1 필지	1,408.4 평	확장 411.4 평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95 호

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- 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용산 1, 방문 1, 연희 3 구역내 일부토지에 대하여
- 2. 도시재개발법제 41 조 및 65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토지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보이고 있으며
- 3. 변경대상 불건지는 변경인가지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2 과 및

1. 대체지정업체

관할구청에 비치하고 공람한다.

1980. 6. 11.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96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80. 6.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업 체 명	신영전자공업(주)	서린전자공업(주)	
대 표 자	조 재 두	이 종 성	
소 개 지	강서구염창동 192	과 동	
생 산 제 품	탄소피막요정저항기	과 동	
지 정 번 호	1527	과 동	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19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교시 제 69 호(78.2.28) 및 동교시 제 99 호(78.3.15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(시행허가)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경비과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6.11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 강서구 신월동 13-1 바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나. 명칭 : 신월중학교
월정국민학교
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33,600㎡ (10,164명)
4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
나. 준공예정일 : 착수일로부터 2 년 이내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
7.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

토 지 조 서

위 치	지 목	지 적	소유자및이해관계인주소성명	비 고
강서구신월동13-1바	임	33,600㎡ (10,164명)	서울특별시강서동1가35-2 이 상 순	소유자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199 호

시장건설허가공고

시장법 제 4 조 및 서울특별시 시

장사무취급 규칙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안에 대하여 개설허가하였기 시장법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.

1980.6.11

서울특별시 장

다 용

- 1. 허가번호 : 6 - 17
- 2. 사장명 : 청한종합쇼핑센터
- 3. 개성자 : 주식회사 청한종합쇼핑센터 대표이사 최남서
- 4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-1342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200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실시계획공람공고

- 1. 서울시 고시제 165 호 (80.5.15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34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 간 일반의 공람개 응하고자 이에 공고함.
- 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

미수청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.
3. 관련도서는 은명구청 로부터 배부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람토록함.

1980.6.14

서울특별시청

공 랑 개 요

가. 사업장위치 : 은명구북면동 79 번지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철사진입로 포장공사

다. 사업의규모 : B = 20 m, L = 64 m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 (은명구청장)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- 180 일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
토 지 조 서

순 위	토지소재지	지목	저촉면적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1	용암동 82-30	대	41.95	서대문구 연희동 89-31	이철순
2	" 82-29	"	36.33	"	"
3	북면동 79-51	"	1.21	은명구 북면동 79-33	장진준
4	" 79-46	"	67	" 79-46	김억동
5	" 79-20	"	34	" 79-20	최상철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201 호
 서울특별시택시자동차
 운송사업면허취소
 서울특별시 택시 자동차 운송사업

제인 다음 업체는 자동차 운수사업
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택시 자
 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
 였기 공고함.
 1980.6.14
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1. 면허취소업종

업종명	대표자	면허대수	주사무소
낙원운수주식회사	김명환	73대	중구 무학동1-준빌딩 310호
과전교통주식회사	김대환	64대	동대문구 면목동 68-2

2. 면허 취소일 : 80.5.26

3. 면허 취소 사유 : 면허조건위반, 사업경영불실 및 전가량 감차

○도봉구공고제 290 호

동사무소위치공고

1980.7.1. 신설 및 위치 변경되

는 동사무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
 공고함.

1980.6.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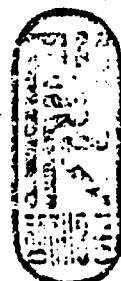

도봉구청장 한 남 영

다 음



구분	동명	위치	개칭일자	비고
신설	상계 3동	도봉구 상계동 474-3	80.7.1	
	상문계 3동	상문동 138-156	80.7.1	
	월계 2동	월계동 419-16	80.7.1	
	공릉계 2동	공릉동 409-4	80.7.1	
	하계 2동	하계동 169-1	80.7.1	
	방학계 2동	방학동 145-3	80.7.1	
위치변경	상문계 2동	상문동 565	변경 80.7.1	

도봉구공고제 210 호
공인의신조및 개각공고
 서울특별시조례제 1413 호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및 제인울 개각사용 승인하였기 동조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함.
 1980.6.12
 도 봉 구 청 장 인

1. 신조: 대상동: 창계 3 동, 월계제 1 동, 월계제 2 동, 상문계 3 동, 공농제 1 동, 공농제 2 동, 하계동, 방학제 1 동, 방학제 2 동
2. 개각대상동: 수유계 4 동
3. 사용일시: 80.7.1. 00:00
4. 신조 및 개각공인의 인영: 다음

인 영				
제 인	(구) 수유계 4 동장직인	(구) 수유계 4 동제인	(신) 수유계 4 동장직인	(신) 수유계 4 동제인
인 영				
제 인	창계 3 동장직인	창계 3 동제인	월계제 1 동장직인	월계제 1 동제인

인 요				
인 요	원계제 2 동장직인	원계제 2 동계인	상운계 3 동장직인	상운계 3 동계인
인 요				
인 요	공농계 1 동장직인	공농계 1 동계인	공농계 2 동장직인	공농계 2 동계인
인 요				
인 요	하계 동장직인	하계 동계인	상학계 1 동장직인	상학계 1 동계인

<p>기 영</p>		
<p>공인명</p>	<p>방학제 2종장직인</p>	<p>방학제 2종직인</p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height: 300px; width: 100%;"></div>		